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7. 10. 18.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금융(관련)기관 취업제한심사대상자, 약90% 심사 통과

엄격한 업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이해충돌 막아야

03 요약

05 조사취지 및 개요

08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21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현황

25 결론

차례

요약 ——— 3

조사취지 및 개요 ——— 5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 8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연도별·퇴직기관별 전체 취업제한심사 현황 ——— 8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후 금융계 취업현황 ——— 9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중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 ——— 12

금융(관련)기관 외 주목해야 하는 비금융권 기관 취업가능 결정 사례 ——— 17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에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사례 ——— 19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현황 ——— 21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심사 현황 — 21

결론 ——— 25

요약

2011년 6월~2017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유관 협회, 대부업체, 전자금융 관련 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심사대상자의 약90%가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가능' 하다는 결정을 받음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하고, 심사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함.

-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 자료를 분석
  - 금융산업의 부실은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 조세·재정, 금융정책, 금융기관의 인허가, 금융기관 등의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정한 공무집행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올해 9월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 현직 공직자에게 채용 부정청탁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금융당국의 퇴직공직자들이 비리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 등에 취업하는 낙하산, 관치금융 인사 비판에 비판이 제기됨.
  - 이에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공직자가 퇴직 후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목적으로 특혜성 정책수립 및 관리·감독부실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취업 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로 '경제·금융관련 정부부처'와 '금융(관련)기관' 간의 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년 동안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 결과를 점검함.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취업을 막지 못해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됨
  - 2011년 6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79명 중 74명(94%)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 특히 이들 3개 기관의 취업제한심사대상자 중 금융기관에 취업을 희망한 경우는 35명이었는데, 이 중 30명(86%)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금융기관 취업 뿐 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대부업체, 관련 협회 등 금융관련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심사대상자 48명 중 43명(90%)이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함.

- 퇴직 전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에 '취업가능' 하다고 결정된 취업제한심사대상자 43명의 취업내용을 재확인해 본 결과, 16명(37%)의 대상자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해당부처가 92%의 지분을 보유한 국가소유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상근감사로 간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한 경우,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다가 저축은행에 취업한 경우 등 퇴직 전 부서·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 사례도 다수 발견됨.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소속 부서나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은 취업제한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심사의 독립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따라서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사 주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으로써 반부패·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부서가 아닌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연관성을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조사취지 및 개요

1. 조사취지

1)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패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기됨. 대표적인 공직부패 중 하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집무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퇴직 공직자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2) 정부기관 중에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1] 에서 정책수립 및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퇴직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정책·감독 업무의 대상이었던 금융기관,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3) 그러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 있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2] 에 다수 취업해옴에 따라 그간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민관유착에 비판이 제기됨.

-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감사로 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들이 불법여신 집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분식회계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의 감사로 취업한 후 해당 금융사와 금융감독원 사이에서 로비스트 노릇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3]
- 올해 9월에는 전직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정 채용청탁을 한 정황[4] 도 드러나는 등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

1 ①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공공기관 관리, 국유재산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함(「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운영 및 금융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함(「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이 보고서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보안원,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유관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핀테크기업, 대부업체 등을 '금융관련기관'으로 분류함.

3 한국경제(2011.5.2.), <금감원 출신 감사가 분식회계 공모…오히려 부실 더 키웠다>,
시사IN(2011.5.27.), <금융감독원이야 '금융강도원이야'>

발생하고 있음.

4)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심사를 엄격히 운영해야함.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음(제17조 제1항, 제2항).
- 만약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을 승인받아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특히 취업제한심사대상자 중에서도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전 5년간 업무관련성을 '소속된 기관'의 범위로 넓게 보아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제17조 제3항).
- 이와 같이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기대하여 퇴직 전 특혜성 정책을 시행하거나 관리·감독을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퇴직 후에도 전 소속기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임.

5)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에 발행한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보고서에서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를 통해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실태를 살펴본 것에 이어, 이번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함.

2.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2011년 6월~2017년 6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 79명
- 2011년 6월~2016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 14명

2) 주요 분석 자료

-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1.6.1.~2017.6.30. 퇴직공

4 노컷뉴스(2017.9.22.), < '금피아'에 휘둘린 채용비리…"금감원 환골탈태해야" >

직자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현황 자료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명단
- 언론기사,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각 취업기관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사이트(https://dart.fss.or.kr/) 등

3. 조사내용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연도별·퇴직기관별 취업제한심사 결과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희망한 경우 취업제한심사 결과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심사대상자 중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직무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사례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중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한 사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연도별 · 퇴직기관별 전체 취업제한심사 현황

1)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연도별 전체 취업제한심사 현황

- 2011년 6월 ~ 2017년 6월 기간 동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는 79명이며 이중 74명(94%)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수는 2014년 6월 이후를 기점으로 그 이전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표1>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연도별 전체 취업제한심사 현황

단위: 명, %

기간	전체 심사대상자(명)	취업가능(명)	취업제한(명)	취업가능 비율(%)
2011.6.1.~2012.5.31	8	8	-	100%
2012.6.1.~2013.5.31	8	8	-	100%
2013.6.1.~2014.5.31	7	7	-	100%
2014.6.1.~2015.5.31	17	14	3	82%
2015.6.1.~2016.5.31	20	18	2	90%
2016.6.1.~2017.6.30.*	19	19	-	100%
합계	**79**	**74**	**5**	**94%**

*참여연대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는 매년 6월~이듬해 5월을 주기로 발행되어 왔으나 2017연도에는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정보공개 결과를 받음에 따라 2016.6.1.~2017.6.30.은 부득이 이듬해 6월까지로, 다른 연도의 데이터와 비교해 1개월 더 추가된 결과를 표기함.

- 2014년 6월 이후 취업제한심사 대상자가 늘어난 가장 주된 사유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이전 대비 1년 연장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심사대상자가 늘어난 효과로 추정됨[5] .

- 한편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이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드러나면서, 퇴직공직자의 금융기관 취업이 위축되었는데, 그 후 3년여 동안 금융감독원의 간부급 직원 인사적체가 발생했고, 이후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2014년 이후 취업제한심사가 늘어난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음.[6]

---

5 해당 기간의 취업제한심사대상자 17명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일인 2015년 3월 31일까지 10개월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6명인 반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 2개월 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11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6 실제로 2011년 6월~2014년 5월까지 매년 각각 1명, 4명, 1명이었던 금융감독원 취업제한심사대상자는 2014년

2)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퇴직기관별 전체 취업제한심사 현황

- <표2>를 살펴보면, 퇴직 당시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2011년 6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퇴직공직자로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14명, 금융위원회의 대상자는 20명, 금융감독원의 대상자는 45명임.

<표2>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퇴직기관별 전체 취업제한심사 결과

단위: 명, %

퇴직기관	전체 심사대상자(명)	취업가능(명)	취업제한(명)	취업가능 비율(%)
기획재정부	14	14	-	100%
금융위원회	20	19	1	95%
금융감독원	45	41	4	91%
합계	**79**	**74**	**5**	**94%**

- 기획재정부는 2011년 6월~2017년 6월까지 6년 동안 14명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받았는데, 단 1명도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없고, 전 대상 모두(100%)가 퇴직 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1명, 금융감독원은 4명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으나, 이들 두 기관 역시 금융위원회는 19명, 금융감독원 41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심사대상자의 90% 이상에 대해 퇴직 전 공직업무와 퇴직 후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후 금융계 취업 현황

1)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의 금융기관 / 금융관련기관 / 비금융권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심사 비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수립하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의 퇴직공직자의 금융기관 취업과 관련된 취업제한심사 현황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금융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업 계획, 실적 등

6월~2015년 5월에 10명, 2015년 6월~2016년 5월에 16명, 2016년 6월~2017년 6월에 13명으로 증가함.
분석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5.4.),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쇄신방안 추진>, 연합뉴스(2014.3.11.), <금감원 고위간부들 민간 금융사로 줄줄이 낙하산> 참고

을 보고해야 하고 금융위원회의 검사·감독을 받음.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 기관인 대부업체 등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또한 금융당국이 감독해야하는 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현황도 별도로 살펴봄.

<표3>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금융기관 / 금융관련기관 / 비금융권 취업제한심사 현황 비교

단위: 명(%)

구분	합계	취업가능	취업제한
금융기관*	35 (100%)	30 (86%)	5 (14%)
금융관련기관**	13 (100%)	13 (100%)	0 (0%)
소계	**48 (100%)**	**43 (90%)**	**5 (10%)**
비금융권***	31 (100%)	31 (100%)	0 (0%)
합계	**79 (100%)**	**74 (94%)**	**5 (6%)**

*예금·대출, 투자, 신용분석, 안정적인 자산 운용, 지급결제수단 제공 등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은행을 비롯한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이 이에 포함됨. 한국은행 자료(http://www.bok.or.kr, 검색일: 2017.10.10.) 참고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금융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등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설립된 기관, 전자금융 등 금융서비스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부업체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직접 받는 기관,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금융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금융관련기관'으로 분류함.

***비금융권 기관으로는 IT·통신(4명), 건설(1명), 감정·평가기관(1명), 법무·세부법인(4명), 강원랜드(1명), 에너지·화학·환경(3명), 연구소(2명), 제조업(1명), 인력업체(1명), 지주회사(3명), 협동조합(1명) 등

- <표3>과 같이 2011년 6월~2017년 6월 동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전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79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48명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심사를 받았음.

-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48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43명으로 90%의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공직업무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음. 이는 100%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비금융권과 비교해 다소 취업제한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취지에 맞게 취업제한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비금융권 기관 중에서도 핀테크사업을 운영하는 IT업체나 금융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등은 일부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2011년 6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취업제한심사에서 100%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짐.

2)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기관·금융관련기관의 유형별 분류

- <표4>에 따라 2011년 6월~2017년 6월 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 ▲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7명, ▲ 신용카드·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 **‘보험회사’** 4명 ▲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 **‘은행’** 1명, ▲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등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확인

<표4>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의 유형(총 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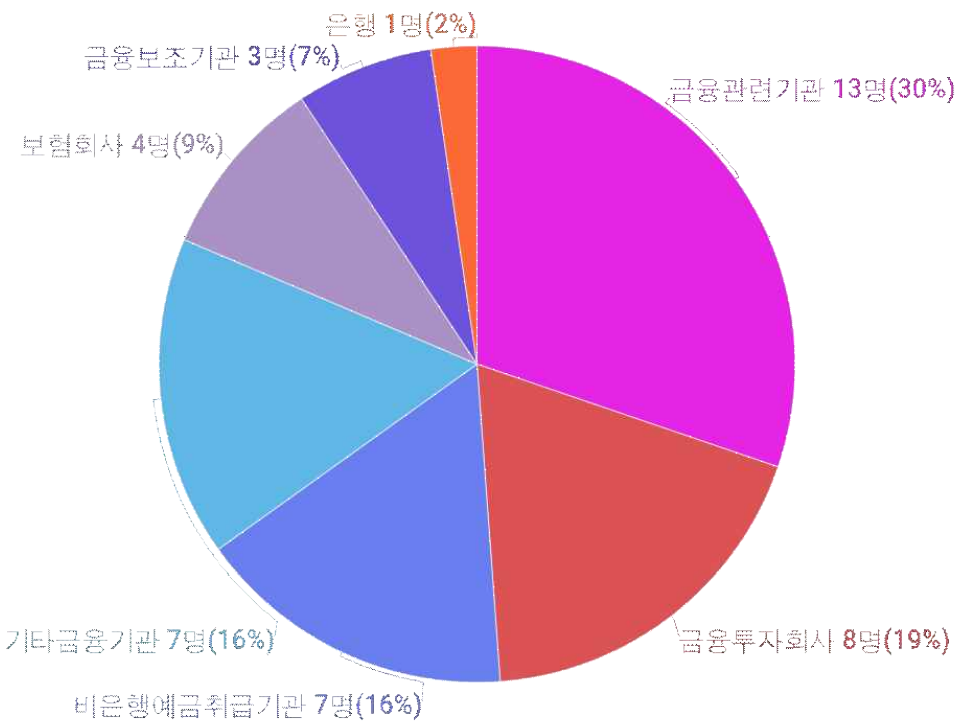

*금융기관 유형 구분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분류 기준을 참고함(http://www.bok.or.kr/ 검색일: 2017.10.10.)

① 은행 : 한국산업은행
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③ 보험회사 :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④ 금융투자회사 :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투자일임자문회사 등
⑤ 기타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캐피탈 등), 증권금융회사
⑥ 금융보조기관 : 자금중개회사, 금융결제원
⑦ 금융관련기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자본시장연구원, 금융보안원,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관련 협회 등) 핀테크기업, 대부업체 등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중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수행한 직무가 퇴직 후 취업예정 기관에서 맡을 직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업에 취업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연관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취업제한심사의 적정성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에 '취업가능' 하다고 결론 내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43명의 사례를 다시 확인함.

  - 퇴직 전 공직업무와 퇴직 후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음. 업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업무의 유형은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7] 에 명시되어있고, 업무관련성 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8] 에 규정되어 있음.

---

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공직업무와 퇴직 후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는 각 기관의 직제 및 설립근거를 명시한 법률 및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조직도 및 주요업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언론기사, 2012~2014년에 참여연대가 발행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참고함.

● 아래 〈표5〉를 살펴보면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의 사례에서 퇴직 전 근무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획재정부 퇴직공직자**의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주요 사례

- 2014년에 3월에 퇴직해 2014년 4월 한국산업은행 취업예정으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퇴직공직자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한국산업은행(기획재정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의 상근감사로 취업예정이므로 업무관련성 의심됨.

● **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주요 사례

- 2015년 5월에 퇴직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였음에도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피감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장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 2016년 5월에 퇴직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으나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피감기관인 (사)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 2014년 1월에 퇴직해 같은 해 2월에 삼성화재보험에 취업예정인 퇴직공직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감독에 관한 사항과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 퇴직연금 등 연금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에서 근무한 후 퇴직연금신탁업을 운영하는 삼성화재보험에 취업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음.

●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사례

- 2014년 12월에 퇴직해 2015년 1월에 취업예정으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감독국 및 금융소비자보호실에서 근무하다가 교보증권 소비자보호실 본부장으로 취업함에 따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음에도 업무관련성

---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이 의심되는 경우임.

- 2017년 6월 퇴직, 2017년 7월 취업예정으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조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후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함에 따라 피검기관으로서 업무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5> 2011.6.1.~2017.6.30.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사례(16명)

No.	퇴직전 5년(혹은 3년) 부서 /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업무연관성 판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규정
		취업예정기관 / 직위			
퇴직 당시 소속기관 : 기획재정부 (2명)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결산심의관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2014-03-27	2014-04-11	2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정부중앙부처의 국장직은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직무연관성을 판단해야 함. 한국산업은행은 국가가 소유한 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가 92%, 국토교통부가 8% 지분보유)이며,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임. 특히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 출자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고, 낙하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제6호
		한국산업은행 / 상근감사			
2	기획재정부세제실관세정책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추진단장/·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고용휴직) / 기획재정부(고위공무원)	2015-10-02	2016-11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기관 업무연관성을 판단해야함.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수립·조정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조세정책 및 제도를 기획, 조정하는 등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제8호
		IBK저축은행 / 사외이사			
퇴직 당시 소속기관 : 금융위원회 (7명)					
3	외교통상부 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참사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2012-11-19	2012-11-30	한국금융증권은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으로서의 업무와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제5호, 제8호
		한국증권금융(주) / 사장			
4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2014-01-22	2014-02-0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은 금융 감독, 검사, 제재 업무, 관련 제도를 기획·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제8호

		우리종합금융㈜ / 사외이사		우리종합금융㈜의 이익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5	·유럽부흥개발은행(영국, EBRD) 파견 / 금융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장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 고용휴직(리딩투자증권) 부장 / 금융위원회 핵심정책추진과제지원단장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2014-01-22	2014-02-01	2014년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 중 최초로 삼성화재(주)의 퇴직연금 신탁업 승인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감독에 관한 사항과 퇴직연금 등 연금 감독을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취업기관과 업무연관성 있음.	제2호, 제3호
		삼성화재해상보험㈜ / 상무			
6	기획재정부(무보직) / 외교통상부 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 기획재정부(무보직) / 금융위원회(고공단)	2015-02-13	2015-03 (심사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직자는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해야하는 직책임. 현대캐피탈㈜는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업무연관성이 있음.	제2호, 제3호, 제8호
		현대캐피탈 / 전무			
7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1과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실 / 금융서비스국 은행과(5급)	2015-05-02	2015-06 (심사 후)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피감기관임. 특히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므로 업무연관성 있음	제3호
		한국금융투자협회 / 부장			
8	금융서비스국장 / 금융정보분석원장 / 금융위원회(고위공무원)	2014-06-10	2016-02 (심사 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 허가·등록, 감독 및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함. 핀테크, 전자결재 사업을 운영하는 코나아이의 사업과 업무연관성이 있음.	제3호, 제8호
		코나아이(주) / 비상근고문			
9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 /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	2016-05-31	2016-07 (심사 후)	보험사업자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피감기관임.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므로 업무연관성 있음	제3호
		(사)생명보험협회 / 전무이사			
퇴직 당시 소속기관 : 금융감독원 (7명)					
10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부국장·팀장 / 소비자서비스국 광주지원 전주출장소 소장 / 소비자보호감독국 광주지원 기획	2014-12-01	2015-03 (심사 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소비자보호실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의 소비자보호실본부장으로 취업했으므	제6호

	팀 부국장조사역 / 기획조정국 광주지원 금융소비자보호실 부국장조사역 /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운영팀 부국장조사역	교보증권(주) / 소비자보호실본부장		로 직무관련성 있음.	
11	저축은행서비스국장 / 연구위원 / 경기도 경제정책과 / 연구위원 / 제재심의실 국장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 (직원1급)	2015-12-02	2016-01-04	2016년 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이 설립됨. 신용정보 통합방식, 집중대상 신용정보 점검, 집중기관 역할정립 방안 등 통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결정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 후 해당 기관에 취업한 경우로 직무연관성이 있음.	제2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현 한국신용정보원) / 부장			
12	거시감독국 금융투자팀장 / 거시감독국 국내조사팀장 / 국제협력국 국제기구팀 부국장.팀장 / 총무국 실장 / 총무국 실장 / 국제협력국 북경사무소 실장	2016-03-04	2016-3월(심사 후)	거시감독국은 거시경제, 금융환경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하고, 금융시장을 정밀 모니터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심사대상자는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퇴직 후 취업한 기관이 금융투자회사이므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제3호, 제8호
		㈜신한금융투자 / 상근감사위원			
13	특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기획팀장 / 특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장 /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 부국장.팀장 / 분쟁조정국 부국장.팀장 / 국제협력국 북경사무소장	2016-03-04	2016-03-2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금융기관과 수요자간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운영을 담당함. 금융투자회사에서 금융분쟁 발생 시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위라고 판단됨.	제8호
		㈜유진투자증권 / 경영임원			
14	총무국재무회계팀장 / 특수은행검사국신용정보팀장 / 서민금융지원국신용정보팀부국장 / IT금융정보보호단은행검사팀부국장/목포시청산업단지정책실(파견) / 제주지원장	2016-07-07	2016-09	KB금융그룹의 계열사인 KB저축은행은 인터넷뱅킹 등 IT 금융서비스도 제공함. IT금융정보보호단 은행검사팀은 IT부문 검사 실시 및 검사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 관련된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제3호
		(주)KB저축은행 / 상근감사위원			
15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일반은행1팀 전문반장(직원2급)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검사1팀 전문반장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검사 3팀전문반장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검사2팀 전문반장 /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검사2팀 전문반장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불법외환거래집중조사TF 전문반장 파견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동양증권특별검사반 전문반장 파견 /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검사3팀 전	2015-06-30	2016-12-26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개인정보불법유통감시단은 대부업체의 불법광고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의 사업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제3호, 제6호
		㈜리드코프 / 준법관리실장			

	문반장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개인정보불법유통감시단 전문반장 파견				
16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런던사무소(직원3급)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 / 전국은행연합회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설립추진T/F파견(직원3급)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 / 서민금융협의회 경인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파견(직원3급) / 금융감독원 총무국(직원3급)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 여신전문검사실검사3팀(직원3급)	2017-06-02	2017-07-01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저축은행검사국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 후 취업한 저축은행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3호, 제6호
		㈜오케이저축은행 / 상무			

* 심사 후는 정확한 취업예정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취업제한심사 이후 취업예정임을 의미함.

금융(관련)기관 외 주목해야 하는 비금융권 기관 취업가능 결정 사례

- <표6>을 살펴보면 2011년 6월~2017년 6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로서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권 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가 6명 확인됨.

<표6>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혹은 금융관련기관이 아닌 비금융권 기관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경우 중 주목할 사례

No.	퇴직전 5년(혹은 3년) 부서 /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주목 필요한 사유
		취업예정기관 / 직위		
퇴직 당시 소속기관 : 기획재정부 (1명)				
1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행정관/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홍보기획국장	2010-12-31	2011-09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은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민영화 및 소비세 등을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기관임. 강원랜드는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의 업무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의심됨.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해당)
		강원랜드 / 상무		
퇴직 당시 소속기관 : 금융위원회 (2명)				
2	금융(감독)위원회 업무이관TF 과장 /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의사운영정보팀장	2013-02-08	2014-01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금융규제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금융규제개혁업무를 총괄하고, 금융관련 법령안 등을 심사하는 금융위원회 규제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장 /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장 /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	김앤장법률사무소 / 금융전문위원		개혁법무담당관실, 은행업 정책 수립 및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3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금융정보분석원장	2014-06-10	2014-0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은 은행, 보험업 등 금융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정책 수립, 인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법무법인 율촌은 금융기관 인수합병·금융규제·금융분쟁에 대한 자문, 금융업 면허 취득·등록·갱신, 보험회사의 설립 및 허가,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에 대한 대응 등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므로 업무관련성 검토가 필요함.
		법무법인(유한)율촌 / 상임고문		
퇴직 당시 소속기관 : 금융감독원 (3명)				
4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품질관리 감리1팀 선임조사역 / 회계제도실 기업회계1팀 선임조사역 /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선임조사역	2012-11-28	2013-03-01	동아제약이 2013년 초 지주사 전환과 기업분할을 추진하면서 '주주 이익에 반하는 분할'이라는 논란을 빚음.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회계조사 업무는 회계의혹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획감리,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및 결과조치 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해당)
		동아제약㈜에서 분할예정의 (가칭) 주식회사 동아(현 동아쏘시오 홀딩스㈜) / 상근감사		
5	상호금융서비스국장 / 소비자서비스국 광주지원장 / 소비자보호감독국 광주지원장 / 총무국 소속 연구위원 / 서민금융지원국 연구위원 / IT·금융정보보호단 / IT감독실 연구위원 / IT·금융정보보호단 연구위원	2015-03-16	2015-05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제반 영업행위 및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의 소비자서비스국 또는 소비자보호감독국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무법인(유)화우 / 고문		
6	IT서비스실/ IT검사지원2팀부국장검사역/ IT감독국검사지원3팀부국장검사역/ 소비자보호총괄국민원상담팀부국장검사역/ 소비자보호총괄국부국장검사역·자문역/ 소비자보호총괄국원스톱서비스팀자문역	2015-06-30	2016-08-08	금융감독원 IT감독국의 직무는 IT·전자금융·지급결제 업무 감독을 기본으로 전자금융 사고와 해킹 감독, 금융사 대상 IT 부문 검사, 전자금융업 인허가·등록 및 전자금융업자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함. IT감리업체인 씨에이에스의 사업과 업무 연관성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함.
		㈜씨에이에스 / 전문위원		

- 2011년 6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심사를 거쳐 금융 규제 및 분쟁, 금융업 인허가 및 면허갱신, 금융당국의 관리와 검사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가 3명 확인됨. 지난 6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법조인이 아닌 퇴직공직자도 퇴직 전 기관과의 법률분쟁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사례임.
  - 2013년 2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금융서비스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금융전문위원으로 취업제한심사를 받고,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

- 2014년 6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직을 수행하다가 퇴직해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
- 2015년 3월 퇴직 전에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국, 소비자보호감독국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 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

● 퇴직 당시 소속기관은 기획재정부였으나, 퇴직 전 5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 행정관의 직무를 수행한 후 취업제한심사에서 강원랜드에 ‘취업가능’ 하다는 결정을 받은 사례도 확인됨.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 행정관은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민영화 및 소비세 등을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직책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음.

● 2015년 6월에 퇴직하기 전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사고와 해킹 감독, 전자금융업 인허가, 금융사의 IT부분 및 전자금융업 검사를 담당하는 IT감독국에 근무하였다가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IT감리업체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에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사례

● <표7>은 2011년 6월~2017년 6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5명의 사례임.

<표7>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사례(5명)

No.	퇴직전 5년(혹은 3년) 부서 /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취업예정기관 / 분야	예정직위
퇴직 당시 소속기관 : 금융위원회 (1명)					
1	금융서비스국장 / 금융정보분석원장	2014-06-10	2015-02 (심사 후)	미래에셋자산운용㈜ / 금융(금융투자회사)	사외이사
퇴직 당시 소속기관 : 금융감독원 (4명)					
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부국장·팀장 / 총무국 실장급 / 손해보험서비스국장 / 손해보험검사국장 / 총무국 연구위원 /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	2013-05-03	2013-05-06	MG손해보험(주) / 금융(보험회사)	부사장
3	리스크검사지원국 신용리스크팀 선임검사역 / 생명보험검사국 리스크	2012-09-10	2014-07-0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장

	검사팀 선임검사역			/ 금융(은행)	
4	금융투자협회 파견 / 기업공시제도실장(직원2급) / 회계서비스2국장 / 회계감독2국장 / 감사실 국장 / 인재개발원 연수 / 경찰대학 연수 / 금융감독원 법무실 연구위원(직원1급)	2015-03-10	2015-10 (심사 후)	동부증권㈜ / 금융(금융투자회사)	상근감사위원
5	상호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지원실장 / 저축은행검사1국장 / 저축은행검사국장 / 상호금융검사국 여신전문검사실장 /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 금융교육국(직원1급)	2016-04-08	2016-05	연합자산관리 / 금융(기타금융기관)	감사

- 2011년 6월~2017년 6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 결정을 확인한 결과, 앞서 <표5>에서 살펴본 업무연관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경우와 비교해 유사한 몇몇 사례가 발견됨.
  - 퇴직 전에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제도의 기획 및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근무한 후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으나, 퇴직 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직을 수행한 후 해당 부서가 실소유하고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은행으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는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져 퇴직 후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음.
  - 퇴직 전 금융기관의 리스크평가 등 건전성을 상시 감시하는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신용리스크팀의 선임검사역을 수행한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금융기관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반면, 퇴직 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한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사)생명보험협회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위 사례와 같이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사례와 대조해보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경우 중 상당수가 '취업제한'에 준하는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현황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심사 현황

- 취업제한심사의 대상자가 되는 퇴직공직자라고 할지라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면, 퇴직 전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이라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9] .

- 2011년 6월~2017년 6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 중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모두 14명이며 이중 12명이 취업승인을 받음. 이 중 5명이 금융기관에 취업했고, 그 외 4명이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소, 협회·단체 등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함.

<표7>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중 퇴직 후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

No.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퇴직일	취업 예정일	취업예정기관 / 분야	예정 직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 취업승인 근거[10]
퇴직 당시 소속기관: 기획재정부 (4명)						
1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주재관 /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 / 대변인 /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 지역발전위원회 단장	2015-12-31	2016-01(심사 후)	한국동서발전㈜ / 에너지(공공기관)	사장	제34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9호
2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용휴직)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관 / 국방대학교(교육훈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파견)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 지역발전위원회 단장(파견)	2016-05-13	2016-05	(사)국제금융센터 / 금융관련기관(협회·단체)	원장	제34조 제3항 제9호
3	외교부주홍콩영사관영사 / 기획재정부(부이사관) / 부산지방조달청장 / 조달청전자조달국장 / 기획재정부4.16세월호참사특별	2017-02-03	2017-02(심사 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금융관련기관(협회·단체)	상근부회장	제34조 제3항 제8호, 제9호

9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조사위원회행정지원실장(파견) / 기획재정부(일반직고위공무원)					
4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기획재정부 부총리실정책보좌관 /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제1차관	2017-06-01	2017-06(심사 후)	(사)한국금융연구원 / 금융관련기관(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제34조 제3항 제9호
퇴직 당시 소속기관: 금융위원회 (3명)						
5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서울특별시 금융도시담당관(파견) /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총괄반장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2011-09-28	2013-01-01	㈜KT캐피탈 / 금융기관	대표이사	제34조 제3항 제7호
6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6-01-18	2016-06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관련기관(연구소)	초빙연구원	제34조 제3항 제6호, 제9호
7	우정사업본부보험사업단장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16-07-01	2016-08	한국자금중개㈜ / 금융기관	대표이사	제34조 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퇴직 당시 소속기관: 금융감독원 (5명)						
8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 /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실 공안제2부 /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실 공안제1부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실 금융조세조사제2부 /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팀 선임검사역 / 특별조사국 테마기획조사팀 선임검사역(직원4급)	2015-03-20	2015-06	법무법인 광장 / 법무법인	전문위원	제34조 제3항 제7호
9	금융투자검사국 검사2팀 / 금융투자검사국 리스크검사팀 / 특별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직원4급)	2016-01-04	2016-02	한국투자증권㈜ / 금융기관	차장	제34조 제3항 제6호, 제4항 제2호
10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14-12-01	2015-10	서울보증보험㈜ / 금융기관	대표이사	제34조 제3항 제1호, 제9호
11	금융투자감독국 자산운용감독실 선임조사역(직원4급)	2015-10-31	2016-08-29	하나금융투자 ㈜ / 금융기관	차장	제34조 제3항 제6호, 제9호
12	분쟁조정국장 / 소비자보호감독국선임국장 / 보험상품감독국장	2016-06-03	2016-11-01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부 대표	제34조 제3항 제8호

	/ 금융혁신국선임국장 / 금융교육국(직원1급)			/ 경영·회계자문		

● 취업승인이 된 주요 사유로는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 전에 종사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6호) 3건임.

- 퇴직 후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고려,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공직 임명 후 본래 종사 분야로 복귀 등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취업승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이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으로 해당분야의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 간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엄격한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 취업승인의 다른 주요 사유로 ▲ 업무연관성 판단기준이 기관 업무연관성 심사 대상자일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맡은 업무와 퇴직 후 취업예정기관에서의 담당할 업무를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을 경우이거나(「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8호) 3건, ▲ 부서 업무연관성 심사 대상자일 경우, 해당 과에서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경우(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 2건 제시됨.

- 국가안보상 이유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를 들어 취업승인이 이루어진 사유도 3건 제시됨.

결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수의 대상자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됨에도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 금융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을 기획·집행하거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정성 확보와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는 매우 중요함. 그러나 이들 기관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금융기관에 취업해 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모피아(Mofia:재무관료+마피아) 또는 금피아라는 별칭은 그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음.
- 2011.6.1.~2017.6.30. 6년 동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대상자 79명 중 74명, 즉 90% 이상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취업제한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퇴직 전 공직기간 및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 연장을 연장하고, 취업제한심사대상 기관 및 직위 범위 확대하며,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평가하는 등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려 한 지난 수년간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음.
- 특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인허가·감독권 행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체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제한심사 대상자의 약 90% 정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음.
- 그러나 취업가능 판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한 대상자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한국산업은행(기획재정부가 92%지분 보유)의 상근감사로 가거나 국고금위탁운용기관의 사장으로 취업한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한 경우,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국에서 근무하다가 저축은행에 취업한 경우 등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음.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위해 업무관련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의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의 연관성 평가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임.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부서의 기준은 해당 과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의 범위가 협소함.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공직자에서 더 많은 직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히는 등 적극적이고 폭넓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완이 요구됨.
- 현재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을 비롯해 공직자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관련 업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취업제한심사나 재산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각 기관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어 심사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의 지원도 제대로 받기 어려움.
- 따라서 반부패·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해야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구성 등을 통해 취업제한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행일 2017. 10. 18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

담 당 신동화 간사 02-723-5302 tsc@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